

고성군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5
----------	-----

제출일자 : 1997. 9. 25.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보건소법 조항을 지역보건법 조항으로 개정(안 제1조, 제5조)

3. 본문

고성군보건소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증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의</u>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업무) ① <u>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에</u>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p>	<p>제1조(목적).....<u>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u>.....</p> <p>.....</p> <p>.....</p> <p>제5조(업무) ①..... <u>지역보건법 제9조</u>.....</p>